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8권 제3호(통권 제111호, 2017 · 가을)

유사수신범죄의 불법성 구조와 유형 분석의 지평*

김 현 수**

국 | 문 | 요 | 약

오늘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경제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사수신범죄로, 이는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이자금) 등을 초과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유사수신범죄는 구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 취약 계층의 투기 심리를 파고들어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특히 그 피해가 경제적 약자에게 빈번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수신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유사수신행위법을 분석하고 여기에 제시된 불법구조를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에서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는 자금모집방식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 변화하는 유사수신범죄의 흐름을 추정해보았다. 특히 이번 연구는 유사수신행위 범죄 관련 법원 판결문, 검·경의 수사사례 및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에 신고 된 유사수신혐의업체의 수 및 수사통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의 대표적인 불법자금 모집유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최초로 소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하고 유사수신범죄 근절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업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약정내용) 사업 진행사항을 수사하여 그 사업의 실체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설명(약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구조 (모델)인 일명 '보상플랜(마케팅플랜)'의 실현가능성에 집중하여 수사하고, 사업의 계속 가능성 여부 및 하위(후순위) 투자자들의 무한확대 방식의 일명 '돌려막기식' 투자원리금 배당방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주제어 : 유사수신규제법, 금융사기범죄, 다단계사기, 사기죄

---

* 이 논문은 2016년도 대검찰청 용역보고서인 김대근, 전현욱, 김현수, "다중사기범죄 유형분석 연구-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을 중심으로"에서 김현수가 작성한 부분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 現,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경찰수사연수원 지능수사학과 외래교수
前,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경감)
법학박사과정

Ⅰ. 현대 사회 경제범죄의 양상

1. 경제범죄의 최근 특성

가. 현대 사회의 주요 특성과 범죄 양상

발전된 과학기술과 금융기법 그리고 익명화된 군중을 특성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는 전통적인 방식과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개인 대 개인 간에 빈번하던 범죄가 오늘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그 양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사기 범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우리 형법 제347조 제1항)로서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기망을 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형태의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많고, 이러한 범죄들은 피싱 범죄[1]와 같이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취약점을 악용하여 광범위한 범행대상에 대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거나[2], 투자를 가장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3]

1) 이에 대한 형법적 분석을 보여주는 전지연, "인터넷 피싱의 형사법적 책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최호진, "사이버 해킹과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등 참조.

2) 이러한 현상을 정보통신사회의 고유한 특성으로 분석하는 김일수·배종대·이상돈,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2001 참조.

3) 예컨대 보이스피싱 범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피싱 범죄는 단순히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피싱을 넘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피싱 범죄의 흐름

피싱	⇒	보이스피싱	⇒	파밍	⇒	스미싱	⇒	메모리해킹	⇒	랜섬웨어	⇒	섹스토션	⇒	이메일무역사기

자세한 내용은 김대근 외,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금융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부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분석 2017 참조.

나. 금융사기범죄의 양상과 특수성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현대의 경제범죄의 특성을 금융사기범죄라고도 부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금융사기범죄(Financial Fraud)란 금융거래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금 상태를 기망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 다시말해 금융기관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비폭력적인 범죄[4]를 말한다. 이것은 금융거래 주체 상호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질서를 위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5] 현대 사회의 신용(credit)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보호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금융사기범죄야말로 오늘날 경제범죄의 주목할만한 특징일 것이다.[6]

이와 같은 현대 사회의 빈번한 경제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범죄를 들 수 있다. 이들 범죄는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사기범죄로서 불특정의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들 범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혈관과 같은 경제와 금융의 신뢰를 저하시켜서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기도 한다. 대개 이러한 사기범죄는 그 피해자가 정보 취약계층이거나(보이스피싱), 경제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유사수신)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위협하고, 사회 내 모순과 갈등을 유발하는 악질적인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그 행위수단이 휴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일 뿐 방식은 전통적인 사기범죄에 가까워서 최근 경제범죄의 흐름을 잘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다.[7] 오히려 유사수신범죄야말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서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하에서

---

4) 최인섭·이천현·오경식·안경옥·이경렬,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69쪽.

5) 도중진, 사기죄와 경제범죄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봄호), 2009, 8쪽.

6) 신용(credit)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역사를 다룬 문헌으로는 Carl Wennerlind, Casualties of Credi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참조.

7) 보이스피싱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보이스피싱은 본질적으로 사기범죄라는 데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보이스피싱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피싱 범죄야말로 언급한 바와 같은 현대 사회의 두드러진 경제범죄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싱은 그 자체로 방대하고 기술적인 설명을 요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는 유사수신범죄를 중심으로 그 유형과 불법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유사수신범죄의 경우

가. 유사수신범죄의 등장

1995년 당시 17개사에 불과하였던 국내 파이낸스사는 1999년 6월 전국적으로 600여개로 증가하였고,[8]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부산지역 상공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자본금 100억 원으로 설립된 삼부파이낸스社는 투자금을 저금리로 끌어들여 이를 고금리로 비싸게 빌려주는 기업금융사업, 부동산컨설팅사업, 영화산업(SF 영화 '용가리')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다. 또한 삼부파이낸스사는 국제통화기구(IMF) 관리 체계 속에서 자금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던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일반 서민들에게 제도권 금융기관 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계열사 4곳을 잇달아 설립하는 등 크게 성장하였다. 삼부파이낸스사의 운영은 연이율 25%~30%라는 파격적인 높은 수익률의 보장을 중심으로, 이에 고무된 투자자들을 상대로 약정한 기일에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을 쌓아 서민 투자자들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1999년 9월 삼부파이낸스사 회장이 투자금 1천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6,532명의 투자금 2천28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형 서민피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파이낸스사의 부도가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의 현실을 계기로(1999년 9월), 사법당국은 384개 파이낸스사를 수사하여 1,723명(이중 약 50%인 848명이 부산지역임)을 사법처리하였는데, 그 피해는 1조 6,848억 원에 이르렀다. 파이낸스사 사태의 초기와 같이 주로 고금리의 투자원리금 지급을 약정하는 형태로 시작하는 유사수신 범죄는 관할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온갖 그럴듯한 새로운 투자아이템을 내세워 투자금을 수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민경

8) 그 원인으로는 1996년 1월 금융자율화 측면에서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한국은행 은행감독장의 포괄적으로 지시·감독권이 폐지되고, 법령에 의한 사후적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금융기관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것에 기인한다.

제의 피해 역시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경제범죄로서 유사수신범죄의 발생 배경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이 비제도권 금융기관인 유사수신업체에 몰리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IMF 사태 이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서민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속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합의와 원화값 하락 효과에 1998년 후반부터 주식식장이 급등하면서 주식투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 서민 투자자들의 막연한 고수익 기대 및 투자대상 업체에 대한 맹신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부족하게 되었다.[9] 셋째, 대부분의 유사수신혐의 업체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으로서 관할 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규제할 소관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단속이 부재하였다.

다. 대응책으로서 유사수신규제의 입법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 범죄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비제도권 금융회사들의 유사수신행위는 -1999년 9월부터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파이낸스사의 부도처럼- 서민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금융피해 사고를 야기한 파이낸스사는 상법상 일반 회사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할 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적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다. 피해의 대형화로 지적된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언론 및 국회 등은 정부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감독원 내에 유사수신 단속 관련 전담팀을 구성(99.11.15.)하고 2000년 1월 1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유사수신행위법')을

9) 유사한 지적으로는 김대근,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3쪽 이하, 제2장 자본시장 규제체제의 이론과 현실 참조.

제정·시행하였다.

법 제정 이전에 유사금융업체들은 상법상 일반회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사전적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유사금융업체들을 난립시키고 그에 따른 피해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뒤늦은 형사 사법적 대응 과정에서 유사금융업체들의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은닉되거나 인멸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반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진실인 사실을 은폐하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상태에 빠지게 하는 행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기망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금융거래에는 파생상품을 비롯[10], 투기적인 성격을 지닌 부분도 적지 않아 어느 정도의 투자위험이 용인된다는 점이다.[11] 즉 이러한 거래자체의 성격상 투자사기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금융 투자자의 유인을 위한 시세전망과 가치판단이 기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사기죄의 행위태양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셋째로는 금융사기범죄의 보호법익을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재산권'에 한정할 수 있는 것인 가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금융범죄는 전형적인 경제범죄의 한 유형으로 다수의 금융거래주체의 재산권이나 공정한 거래질서 등 초개인적·사회적 법익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개인적 재산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

10)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는 Steffen Tolle, Boris Hutter, Patrik Rüthemann, Hanspeter Wohlwend, Structured Products in Wealth Management, Wiley, 2012. 특히 Chapter 1 참조. 한편 '파생상품'이라는 개념은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금융투가상품'으로 바뀌었다. 상세한 설명은 김대근,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9쪽.

11) 김대근,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8쪽.

로 금융사기범죄의 성립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처럼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할 것인가 라는 점도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는 초개인적 또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피해를 포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발생을 금융거래주체가 인식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12)]

따라서 대형 금융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사금융 업체들의 불법 자금모집 영업행위를 조기에 차단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이자금) 등을 지급을 목적으로 자금 융통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향후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농후한 불법 자금모집영업 행위를 금지하고자 유사수신행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Ⅱ. 유사수신 규제 법제 분석

1. 유사수신행위법 개관

가. 입법의 취지와 규제 영역

언급한 것처럼 유사수신행위법은 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5호로서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제도권 유사금융회사의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제도권 금융회사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 등은 각각의 근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에 의하여 설립되고 업무방법 등이 규정된다. 이 기관들은 관리·감독

12) 도중진, 사기죄와 경제범죄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봄호), 2009, 10쪽.

근거 등이 개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금융회사이다. 그러나 비제도권 유사금융회사는 상법상 일반회사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정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유사금융회사에 출자되거나 예탁된 금전은 「예금자보호법」[13]의 예금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약 유사금융회사가 사업설명회에 따른 투자를 통해 고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여 도산할 경우 거래자는 투자원금을 전혀 보상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갖는다.

나. 법률의 구조와 유사수신행위의 개념 지평

1) 법률의 구조

유사수신행위법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동법 제2조의 2)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동법 제2조 제1호),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동법 제2조 제2호), ③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賣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私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동법 제2조 제3호),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동법 제2조 제4호)를 말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 주체

동법 제2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대상과 관련하

13)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유사금융회사는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산 등의 사고발생 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현실적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절차를 걸쳐 투자원리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대상업체의 재산 시제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 동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비제도권 유사금융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유사수신행위법의 불법 구조

동법 제2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불법 자금모집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그 형태는 계속적으로 지능화·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간의 수사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대표적으로는 '엔젤투자조합[14] 투자 빙자 출자금 수신행위'를 들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조합으로 정부에 등록된 면세사업자라고 하면서, 고리 이자 지급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엔젤투자 조합원 자격을 위한 출자금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특히 1구좌 투자 금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증서를 교부하여 주며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금을 되돌려 주고 매월 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준다고 한 사건이다(100만원 투자 시 월 5%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연

14) 엔젤투자조합은 벤처기업의 창업 또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조합이다.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천사 같은 존재라 해서 이렇게 불린다. 벤처의 본고장 미국의 경우 넷스케이프의 창업자인 짐 클라크 회장,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창업자인 폴 알렌 등도 엔젤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다. 통상 엔젤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상장 후 주식양도 차액을 통한 고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한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투자자금 및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투자사안에 따라 수익배분(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기업 측의 지분재매입,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회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창업 촉진 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0%의 수익 보장)

나.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조 제2호)

1990년대 후반에 기승을 부리던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투자금융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럴 듯한 유명한 사업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였던 형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삼부파이낸스의 고금리 예·적금 등 형태의 수신행위'가 대표적인 사건이다. 1996년 1월 정부의 금융기관 자율화 조치로 부산지역 상공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설립한 일반금융회사. 기업금융, 건설, 부동산 컨설팅사업, 영화산업 등에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3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삼부 기업형 펀드'와 '삼부 벤처 골드러시 펀드', '엔젤투자 펀드' 등의 투자 상품을 출시하여 예·적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삼부파이낸스의 도산으로 일반 서민 투자자 6,500여명이 2,280여억 원을 손실을 입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賣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私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제2조 제3호), 및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조 제4호).

파이낸스사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리의 이자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 수신을 통한 단순 불법 자금모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법의 제정·시행 이후에는 사채·상품권·회원권 등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형태 또는 의료기 임대사업 등을 가장하여 의료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관리하여 고수익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형태로 투자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형태로 등으로 자금모집 행위가 변화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의료기 판매 및 임대사업 빙자 투자금 수신행위'를 들 수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의료기 임대사업을

빙자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6천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천여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였고, 전(前) 유명연예인 ○○○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의료기 1대를 150만원에 구입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면, 의료기 임대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약 25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6,000여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3,000여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다.

라.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 규정(제4조)

동법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戶)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① 금융 또는 파이낸스, ② 자본 또는 캐피탈, ③ 신용 또는 크레디트, ④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⑤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⑥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상 일반회사에 불과한 불법 유사금융회사가 선량한 금융거래자를 상대로 마치 관할 당국의 엄중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인양 광고 등을 하는 행위와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15)]

마. 유사수신행위 벌칙 규정

동법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제6조 제1항),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6조 제2항), 법인

15)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50호, 2000. 1. 12.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참조.

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있으며, 제5조를 위반하여 금융업 유사상호(① 금융 또는 파이낸스, ② 자본 또는 캐피탈, ③ 신용 또는 크레디트, ④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⑤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⑥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 이른바 '다단계 사기' 개념의 문제점

유사수신행위법 제정·시행 이후 그 간의 수사실무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불법자금 모집행위인 유사수신행위 업체들은 단순히 고수익의 수익금, 이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는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들을 확보하고자 다단계판매업체들의 판매원 확장 수단인 후원수당지급방식(수사실무에서는 이를 일명 '마케팅플랜' 또는 '보상플랜'이라고 함)을 도입하고 있다. 즉, 당해 판매원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실적이 발생할 경우 그 매출실적의 일정 부분을 후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당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원수당을 매개로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상대로 그럴듯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출자금 또는 투자금의 전액이상을 보장해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 이자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사기'라는 용어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을 살펴보면, 방문판매법은 1991년 12월 31일 최초 제정되어(1992.7.1.시행) 이후 다단계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1995년 1월 5일 전부개정 되어(1995.7.6.시행) 이때부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후원수당을 판매가격의 35%이내 범위에서 지급하고, 환불 보증금 공탁제도를 실행함으로써(2003년부터는 소비자피해보상관

련 공제조합 가입을 제도화하였음) 방문판매업을 합법적인 유통산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단계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일확천금의 사행심 유발과 연고제 판매로 인하여 피해발생 시 사회적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의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면서 대규모의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다단계판매는 '사기'라는 "주홍 글씨"로 낙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간의 수많은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및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와 '불법 다단계 사기'의 차이점은 재화나 용역 등의 거래로 실제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모델이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을 비롯하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및「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피라미드 스킴'(Pyramid scheme) 또는 '폰지 스킴'(Ponzi scheme)[16]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투자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후(後)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先)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방식의 '피라미드 금융사기'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7]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수익구조는 후(後)순위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도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투자 시스템이 갑작스레 무너졌을 경우 대규모 피해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

16) 폰지 스킴(Ponzi scheme)이란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으면서 뒤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일종의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 같은 수법으로 희대의 금융사기극을 벌인 찰스 폰지(Ponzi)의 이름을 땄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2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폰지는 국제쿠폰사업을 벌인다며 90일 만에 원금의 1.5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당시 은행이자율이 연 4%였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률이었다. 미국 전역에서 4만여 명의 투자자가 몰려들었고 투자액은 1천500만 달러(현재 가치로 1억6천200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폰지는 실제로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았고 처음 모은 투자액은 자신이 챙긴 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그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 폰지 게임은 투자자가 더 모이지 않자 종말을 맞이했다. 폰지는 투자자를 모은지 1년 만에 구속됐으며 3년형을 구형받았다. "[시사금융용어 3분해설] 폰지 사기(Ponzi scheme), 연합인포맥스, 2008.12.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1969978.

17) 외국, 특히 미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자본조달 방식에 의한 사기범죄가 빈번하다. 미국 사회내에서 경제범죄, 특히 사기범죄의 발생사에 주목하는 문헌으로는 Samuel W. Buell,Capital Offenses: Business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s Corporate Age, W. W. Norton & Company, 2016 참조.

유사수신업체의 일반적인 피해사례를 보면, 실제는 아무런 이윤창출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더 많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과 방법일 뿐인 경우가 많다. 또한 그 수익금이 미미하여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그럴듯한 사업을 빙자하여 대규모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평생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선(先)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후(後)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없는 경우 결국 유사수신업체의 도산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다단계판매업을 합법화 시킨 이후 20년 이상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사법기관 및 언론이 '다단계 사기'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 관련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까지 "다단계판매업 = 사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용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른바 '다단계 구조'에서 형사 불법의 핵심

현행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며, 동법 동조 제1호에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호 각 목에 이러한 행위유형을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동호 가목)",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동호 나목)",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동호 다목)"가 이에 해

당한다.

위와 같은 방문판매법상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는 수사실무상 형사특별법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고 있다.[18)]

4. 형법상 사기죄와의 관계

가. 사기죄와의 구조적 유사성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행위태양은 사기죄의 그 것과 비슷하여 수사실무상 사기죄 검토는 필수적 요소이다. 유사수신범죄의 그 본질은 사실상 사기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대부분의 불법 자금 모집은 기망을 본질적 수단으로 한다. 그럴듯한 투자설명회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의 수익구조(수익모델)는 그 실체가 없거나, 일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여 추가 투자를 유인하거나, 주변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는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약정한 고수익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재무 상황임에도 마치 투자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고수익의 이자금 등을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수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수사 및 입증의 어려움

그러나 사법기관이 유사금융회사의 수신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하기에는 실무상 매우 곤란한 점이 많다. 일반적으로 투자전망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 함은 그 바탕에는 높은 투자수익에 따른 고위험 부담도 투자자가 어는 정도는 용인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실제 사업진행과정에서 외부적 투자환경 요소의 악화로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다수의 판결

18)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을 통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투자자의 신고 및 구체적인 피해 진술 없이는 사법기관에서 유사금융회사들의 불법자금 모집행위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기죄로 인지하여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투자자들은 유사수신업체가 상당기간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영업행위를 지속한 후, 더 이상의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수익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즉 피해자들이 하나 둘씩 발생했을 때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 이 경우에 비로소 사법기관은 수사를 착수하게 되고, 유사수신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의 허구적 실체가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Ⅲ. 유사수신범죄의 유형 검토

1. 유사수신범죄의 특성 일반

가. 유사수신범죄의 양상

1990년대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수신을 통한 단순 자금모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12일 유사수신행위법의 제정·시행 이후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하였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 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산업, 부동산(납골당) 사업 투자 또는 벤처사업 투자, 문화·레저산업 투자, 해외투자(광물, 커피, 보석 등),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사업, 인터넷 쇼핑몰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일반인들도 단기간에 쉽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정부등록법인, 허가·인가 또는 신고업체 등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 다단계판매업 등록증·국세청 사업자등록증·금감원 투자자문(일임) 등록증·중소기업청의 개인투자조합 등록증(엔젤클럽)·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등록

증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각종 신문사 및 잡지사의 광고성 기사 및 인터뷰·케이블 방송출연·각종대회 협찬 등을 통한 지능적 홍보전략으로 회사의 신뢰도를 높인 후, 사업설명회 또는 1:1면담 방식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사수신범죄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범죄수법도 다양화·고도화·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데 그 간의 수사사례 및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불법 유사수신범죄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 유사수신범죄의 형사정책적 특성

첫째,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은밀히 투자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은밀히 수신행위를 한다. 투자금을 수신하는 초기에는 고수익의 투자원리금을 약정대로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주지 않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차후 피해자 신고가 있을 때는 이미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폐업을 하고 업체의 대표 등이 도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피해규모 또한 막대한 경우가 많다.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는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입건되고 수사가 진행되어 사법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이 회수되어 그들이 입은 피해가 구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둘째,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투자설명회나 1:1 면담을 통해 향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한 사업은 실제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설령 현재 사업의 일부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기존 투자자들의 재투자 및 신규 투자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 사업에서 유사수신업체들이 실제로 자금을 운영하는 비율은 전체 수신금액의 10%미만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을 통한 수익발생도 극히 미미하고, 그와 같은 수익금으로는 고금리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수신한 자금의 대부분이 선(先)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금리 배당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후(後)순위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수익구조(수익모델)를 가지고 있다.

셋째,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보면, 대부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및「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전과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한탕주의식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로서, 단기간 이내 자금을 모집한 후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영업장소 및 회사의 상호를 자주 변경한다. 경제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형벌 투입의 정당성은 이처럼 이익과 이윤에 대한 과도한 열정 때문에 (실정법적) 질서에서 벗어난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19] 동일한 형태 또는 유사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자금 모집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를 가장한 적극적인 내사 또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자금 모집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정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처벌 시 업체의 대표자 등 주요 행위자의 처벌 외에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는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에 의한 불법자금 모집행위와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유사수신업체들의 불법자금 모집방식은 대부분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유사수신업체가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회사 또는 방문판매 등을 가장한 유사다단계판매업의 형태로 유사수신행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의 후원수당 지급체계인 마케팅플랜(또는 '보상플랜'이라고 함)의 투자원리금 지급체계는 속칭 '순환 마케팅' 또는 '포인트 마케팅'이라고 한다. 순환 마케팅 및 포인트 마케팅의 핵심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다가 어느 시점이 도래되면 '지금까지 지급받았던 투자원리금을 재투자할 경우 더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든지 또는 '각각의 투자금에 점수(Point)를 부여하여 일정 이상의 점수에 도달할 경우 한꺼번에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 마케팅 및 포인트 마케팅은 고수익의 투자원리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시점까지 불법자금 모집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경제사정에 노인이나 가정주부들이다. 따라서 유사수신범죄로 인해 이들이 입는 피해는 노후대비 및 가정경제 파탄이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이러한

19) Bernard E. Harcourt, The Illusion of Free Marke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93-94.

피해에 대하여,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행정당국의 신속한 단속을 위한 실질적 조사권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대응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2. 연도별 특성: 유사수신 범죄의 유형변화

가. 2000년 초반의 유사수신 형태 분석

1990년대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수신을 통한 단순 자금모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12일 유사수신행위법이 제정·시행 이후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2000년에서부터 2005년 사이에는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 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산업, 부동산(납골당) 사업 투자 또는 벤처사업 투자 등 유망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거나 사법당국에 단속되기 어려운 형태로 유사수신의 형태가 다양화 되었다. 다시 말해 물품판매 등을 가장하여 투자자를 모집, 투자금액 총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매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 이상의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고 유인하는 식의 형태가 증가하였다.

〈표 2〉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 유인 유형별 현황 ('00.1.1.~'05.9.30)

구분 (년도)	단순 수신	특정상품 용역제공	부동산 (납골당)	벤처 주식투자	문화 레저	해외 투자	대부업 전주 모집	인터넷 쇼핑몰 투자등	계
2000	19	5	8	13	-	2	-	-	47
2001	12	48	33	25	13	5	-	5	141
2002	14	77	28	6	5	1	-	4	135
2003	12	50	19	14	15	-	18	5	133
2004	18	61	15	22	37	-	4	24	181
2005	13	52	9	2	20	-	3	16	115
합계	88	293	112	82	90	8	25	54	752

※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경찰에 통보한 정보의 분석자료.

나. 2000년 중반의 유사수신 형태 분석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투자금을 수신하는 수법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다양화 되었다. 아래 <표 3>의 유형별 유사수신 혐의 업체 현황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사수신업체가 불법자금을 모집한 유형을 보면, 그것은 해외투자, 에너지개발 등 해외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FX마진거래 등 선물·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등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방식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투자원금의 3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자금모집 형태가 만연하였던 것이다.

〈표 3〉 유형별 유사수신 혐의 업체 현황 ('05.1.1.~'08)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2005	2006	2007	2008
농수산물 및 축산물,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판매 및 수입품 등 판매사업 가장	29	39	26	13
특수기계 제작 및 신기술개발 사업 가장	28	39	23	4
자판기 등 각종기기 임대사업 가장	22	17	7	7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 가장	11	14	21	13
자판기 제조 및 판매사업 가장	11	3	13	1
유통업 및 다단계 판매사업 가장	8	14	13	4
미용제품 및 귀금속 판매사업 가장	7	6	6	-
상품권 발행·판매사업 가장	5	14	20	1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사업 가장	5	7	8	3
레저사업 가장	5	8	2	1
비상장주식 등 매매(상장) 및 인수·합병 사업 가장	-	6	25	4
대부업 및 투자자문사 운영 사업 가장	5	4	10	1
전자화폐, 선불식· 적립카드 발행사업 가장	-	3	5	3
해외자금 유치 및 해외 투자사업 가장	3	2	6	7
해외 통화선물(FX마진) 등 금융업 가장	-	-	-	12
프랜차이즈(체인점 등) 분양사업 가장	-	-	-	7
대체에너지 개발, 자원개발, 자원재활용 및 환경개선 사업 가장	-	-	-	11
게임·오락 등 사행성 사업 등 기타	27	16	9	16
계	166	192	194	108

※ 경찰청 수사 참고자료.(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 2009.10

다. 2010년 이후의 유사수신 형태 분석

2014년부터 2016까지 최근 3년간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에 접수된 유사

수신행위 범죄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상가 등 부동산 관련 사업, 부동산 경매사업, 임야 공동구매, 펜션·고급빌라 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사업 등을 가장한 투자금 수신형태가 성행하였고, 그 외 비상장주식투자사업, 중국 거대기업 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fintech) 등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사업 가장한 투자금 모집형태 또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크루즈 여행, 전기 특허품, 스크린 골프,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등 제조·조립·판매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범죄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투자금의 모집형태가 나날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설령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수익의 투자원리금을 배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최근 3년간의 유사수신행위 범죄유형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최근 3년간 유사수신업체의 사기수법 유형 분류 ('14.~'16)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2014	2015	2016.6월	계
비상장주식, 중국 거대기업 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 사업 가장	26	24	15	65
부동산 경매사업, 임야 공동구매, 펜션·고급빌라 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 등 부동산 관련 사업	31	12	1	44
크루즈 여행, 전기 특허품, 스크린골프,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등 제조·조립·판매사업 가장	14	13	17	44
양계, 생수, 비타민나무, 블루베리 등 특수작물 재배사업 가장	5	10	2	17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 전통계조직 등 투자사업 가장	4	15	1	20
▶ 기타사업 - 가상화폐, 골드바 유통, 납골당(수목장) 분양, 보석 광석 개발, 쇼핑몰, 고대 골동품 거래 등 사업 가장 - 로봇승마 사업, 스크린 경마장, 자동차대여, 특허기술 개발 등 사업 운영 가장	35	36	28	99
합계	115	110	64	289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2016. 8. 09.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2015. 6. 23. 보도자료.

4. 유형별 자금모집: 유사수신업체의 불법자금모집 형태 분석

최근 발생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범죄 관련 법원 판결문, 검·경의 수사사례 및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에 신고된 유사수신혐의업체의 수 및 수사통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의 대표적인 불법자금 모집유형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비상장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

이러한 유형에서는 주식투자, 크라우드 펀딩, FX 마진거래, 종합금융건설팅 사업, 핀테크 〔P2P 상품투자) 등을 사칭하거나 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식투자 사칭 유형

【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사건 】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구속송치 한 사건이다.[20] 사건의 개요를 보면, 피고인은 2012년 2년 27년경 서울 ○○구 ○○동 ○○빌딩 ○층에 있는 구스굿 역삼지사 사무실에서, 구스굿 회사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모집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 데이트레이딩 전문회사인 것 마냥 기망하여 투자설명을 하였다.[21]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양○○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64.

21)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저희 구스굿 회사는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로 대표 기○○은 서울대학교 공과대를 졸업하였고, 교보증권에서 20년을 근무하며 상장 주식을 운영·관리하였으며, 국가대표 운동선수 연금 200억 원 이상을 운영·관리하는 총괄팀장으로 수익을 크게 창출한 공적이 있고, 최근 5억 원의 위탁자금을 가지고 상장주식 거래를 하여 3개월 만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자산증식 실적이 있으며, 법인 자산운영 관리회사를 설립한 경력이 있는 국내 주식 데이트레이딩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 기간 2개월(2012년 9월 12일 이후 약정기간을 3개월로 변경)동안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20일 기준으로 매일 투자금의 1%(월 20%)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2월 27일경부터 2012년 11월 16일경까지 구스굿 역삼지사 및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158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538회에 걸쳐 합계 4,468,090,000원을 수신하였다.

2) 크라우드펀드 사칭 유형

[250% 고수익 보장, 크라우드펀딩 빙자 유사수신]

2016. 2. 25. 청주지방검찰청(형사1부)는 2015년 8월 6일경부터 2016년 2월 1일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ㅇㅇ이 부도상태임에도, 피해자 2,241명에게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25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147억 원을 수신하여 이를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등 6명을 기소하였다(구속 3명, 불구속 3명). 이 사건은 크라우드펀딩과 유사수신·다단계사기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서, 피의자들은 크라우드펀딩과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방식을 결합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의자들은 2015년 5월경 이미 운영이 중단된 건조밥 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ㅇ가 대해 유망한 업체라고 소개하면서 온라인 및 공장견학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피의자들이 특허권과 관련 공장설비 등이 있어 사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 2015년 5월경에는 이미 채무가 35억 원에 달하여 이미 공장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위해 지급한 건조밥 등도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OEM 방식으로 납품받는 등 사업체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중국 플랜트 수출을 통한 대출금 50억 원 유입 부분도 사실상 계약체결 전무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기계 설비 등을 판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투자금 모집방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사수신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인 돌려막기식 투자 사기였다. 205% 수익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투자금의 대부분은 금융피라미드 조직 운영진에 대한 수당으로 소진되었고, 실제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이 없었다.

3) FX마진거래[22] 사칭 유형

기존에 예·적금 형태로 금융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던 전통적인 범행수법과 더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를 통한 시세차이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유사수신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투자자문업 로터스아이비 사건 】

피고인은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로터스아이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공범 피고인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기로 공모하고 2008년 4월 28일경부터 2008월 10월 10일경까지 서울 ○○구 ○○동에 위치한 ○○○○○타워 사업설명회장과 부산지사 등지에서 피해자 염○○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였다.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로터스아이비에서 '외환 마진 거래' 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세 가지가 있는데, ① 'LT 1호'의 경우 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6일 이후 배당금 30만 원 및 원금을 지급하고, ② 'LT 2호'의 경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6일마다 기본배당금 30만 원과 추가배당금 20만 원 합계 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이 되어 만기가 되면 원금을 지급하고, ③ 'LT 3호'의 경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6일마다 기본배당금 30만 원과 추가배당금 50만 원 합계 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 되어 만기가 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의 모집실적 및 투자금액에 따라 'FC', '전임FC 1급', '전임FC 2급', '선임FC 1급', '선임FC 2급', '수석FC 1급', '수석FC 2급'으로 승급을 하면서 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소개비, 관리배당금, 공로배당금 등 수당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22)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는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FX마진거래 가장행위는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염○○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1,22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70억 9,700만 원을 수신하여 편취하였다.[23)]

4) 종합금융건설팅 사업 가장 유형

유사수신업체가 제도권금융의 예·적금 방식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마치 투자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며, 중도해약도 가능한 적법한 금융업체인 것처럼 허위계약서, 공증서 등을 발행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거짓 선전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적법한 금융업체로 가장하여 마치 외국기업이 적법하게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I뱅크, T투자자문, N뱅크 사건] [24)]

<I뱅크 사건> I뱅크는 금융업 등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무인가 업체이다. 하지만 한국의 골드만 삭스를 만든다고 하면서 'I뱅크는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자산관리, 부동산투자, 미술품투자 등)"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고 45일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무조건 정해진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I뱅크는 원금보장의 조건으로 계약서, 공증서,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특히 영업사원 150여명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T업체 사건> T업체 대표 김○○는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확실한 금융상품과 모건스탠리의 안정자금에 투자해 자금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는다.'하였고, 투자자들에게 '복복리로 1년에 105%의 고수익을 확정지급과 원금보장, 단기투자의 경우 월 5%의 확정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한다.'고 호도하며 전국 각지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는커녕 돌려막기로 투자수익과 모집수당을 지급하였다.

<N뱅크 사건> 'N뱅크는 스리랑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글로벌 회사로서,

---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215.

24)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보도자료. 2016. 11. 9

한국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인터넷은행 설립 조건이 회원 3만명 이상 되어야 허가를 받는다.'고 하며, '1구좌(1만달러)를 투자하면 15개월에 228%(원금100%+수익 128%)의 원금과 고수익 보장한다. 이것은 뉴질랜드 금융보증, 세계적 기업 리○가 보증한다'고 주장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수신하였다.

5) 핀테크 〔P2P 상품투자 가장〕

이것은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fintect)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이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씨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P2P 대출 업체 '레인핀테크'는 P2P 대출 상품을 마치 원금 보장이 되며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식으로 투자설명회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이로 인해 23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P2P 대출투자 상품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유사수신 행위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Coin) 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

최근 획기적 수익률을 내세우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성행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어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가상화폐란 컴퓨터 등에 정보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실제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유통되는 것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현금으로 환절될 수 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널리 유통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상화폐 발행업체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25]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의 불법 자금모집 관련사건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레인보우(KRTM) 헷지비트코인 및 Mface 투자사기 사건 】

<레이보우 헷지비트코인 사건> 피고인들은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서울 ○○ 소재 'A코인' 본사 및 전국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현금을 환절될 수 없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A코인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행해 주겠다."라고 속여,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8억 원을 가로챘다. 수원지검은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 'A코인'의 대표 등 주범 4명을 사기죄와「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구속 기소하였다.

<Mface 사건>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경기 ○○시 ○○구에 소재 'Mface사' 한국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될 수도 없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포인트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Mface사 본사에서 만든 가상포인트를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배 상승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다단계방식으로 100억 원을 가로챘다.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 무등록 다단계업체 'Mface사' 경기지사장을 구속 송치하였다.

다.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 등 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민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는 회사

25) 화폐의 가치 담보를 해줄 수 있는 실질 자산 보유의 개념은 예를 들어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金本位制度)'를 들을 수 있다, 즉,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본위제도 이다. 화폐제도는 이러한 등사성에 대한 믿음, 즉 신용을 통해 유지된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김대근, 근대사회에서 화폐화의 딜레마와 법의 문제,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4, 48쪽.

설립에 어려운 생산자들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조합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26]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합원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여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량한 시민이나 고령자들을 상대로 그럴듯한 사업을 내세워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체인 협동·영농조합까지 침투하여,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지역으로 확대되어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있다. 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경향을 갖고 있다. 또한 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는 불법 금융피라미드 업체들의 후원수당지급체계인 일명 '보상플랜' 또는 '마케팅플랜'의 영업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규모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소개한 지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범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국 직거래방송 협동조합 가입비 투자사기 사건 】

피고인들 직거래방송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9월 26일경부터 2013년 11월 14일경까지 816회에 걸쳐 총 합계금 76,000,000원을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수신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박○○에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조합원 및 일반 회원의 휴대전화로 방송을 전송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송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5억 원의 출자금 목표액이 필요하다, 1구좌

26)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012. 12. 1.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0,000원을 투자하면 일반조합원,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특별조합원이고, 일반조합원 중 2명을 소개하고 하부에 10명을 구축하면 매니저가 될 수 있다. 일반조합원은 직거래 방송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특별조합원은 향후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는 주식 200주를 주겠다. 매니저는 모든 수익의 20%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을 수 있고 2013년 12월 30일이 되면 20만 원을 지급받고 2014년 6월부터는 200만 원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출자 50,000원으로 조합원의 혜택과 에스엠(SM) 멤버스 매니저로 평생 월 수백만 원의 공유지급을 받게 해주겠다. 또한 조합원비는 반환청구하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27)]

라. 부동산 관련 사업 등 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

【 21세기컨설팅 부동산개발 투자사기 사건 】

피고인은 서울 ○○구 ○○동에 본사 및 영업을 위한 지사를 두었고, 그 외에도 서울 여러 지역에 영업을 위한 지사d를 두었다(영업지사별로 4팀 내지 12팀까지 있음). 지방에는 강릉지사 및 21세기프로젝트(계열사), 정선지사 및 함백(계열사), 제주지사 및 관광개발제주21(계열사), 횡성지사, 평창지사, 21세기티앤디(계열사) 등을 두었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의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계약직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일비 명목으로 1일 10,000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월 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3개월 내에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영업실적이 좋으면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사원, 팀장, 지사장, 영업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었으며, 상시 600여 명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강릉, 제주, 평창, 정선, 횡성, 울진 등 전국 9곳 사업부지에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각종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그리고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의 유인하거나 전화번호부 등을 활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또는 연고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 등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도합 5,433회에 걸쳐 총합계 2,039억 4,31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882.

만 2,000원을 수신하여 편취하였다.[28)]

5.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신고현황

이처럼 유사수신범죄의 특성과 유형변화를 살펴보면,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그 범죄수법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투자[29)],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30)], P2P금융(peer to peer finance)[31)], 비상장주식 투자 등으로 계속적으로 다양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지역별 분포,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상황은 아래의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및 수사통보 건수 (금감원 2016.11.9. 보도자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0.	합계
신고	..	181	83	133	253	445	1,095
수사통보	48	65	108	115	110	114	56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18.

29)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는 거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하며, ①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② 경우에 따라 화폐를 대신하여 활용, ③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디지털통화인 Bitcoin(2009년 1월 일본의 Satoshi Nakamoto가 개발한 글로벌 디지털 가상화폐로, 전체 디지털 통화 시가총액 중 약 90% 비중을 차지)이외에도 Ethereum, Litecoin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다수 개발(전세계적으로 약 700개) 되어 유통 중이다(금융위원회 디지털통화 제도화 T/F 제1차 회의 자료, 2016.11.17.).

30)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인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31) P2P금융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P2P(peer to peer)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으로서,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말한다. 국내에 처음 P2P금융이 도입된 것은 2007년이며, 현재 '머니옥션'과 '팝펀딩(popfunding) 등의 P2P금융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dic.mk.co.kr/cp/pop/today.php?dic_key=20876, (2016.10.22. 최종검색)

〈표 6〉 최근 3년간 유사수신 혐의업체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전북	충남	부산	울산	기타	합계
2014	68	5	16	6	3	6	5	2	4	115
2015	66	5	11	2	3	1	4	-	18	110
2016	37	2	2	2	1	-	2	1	17	64
소계	171	12	29	10	7	7	11	3	39	289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2015. 06. 23.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2016. 08. 09. 보도자료

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지역별 현황표 <표 6>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서울(171개), 경기(29개), 인천(12개) 등 주로 수도권(212개, 전국의 73.3%)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지역 중에서도 강남구 테헤란로 주변에 50% 이상의 상당수 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Ⅳ. 유사수신 범죄 유형에 따른 실무적 대응 방안 검토

1. 수사 실무에서 주목해야 할 점

가. 법원의 일관된 입장

위와 같이 최근 유사수신범죄 관련 주요 사건을 유형화하고 분석하면 유사수신범죄에 있어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품거래, 금전소비대차약정, 투자계약서(약정서), 위탁판매계약서(약정서), 선물매매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거래가 그 내용의 실질에 있어 이를 빙자하거나 가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 또한 일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다.[32)]

나. 주목해야 할 수사상의 요점과 논증 대상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사의 초점으로 삼고 논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사업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약정내용) 사업 진행사항을 수사하여 그 사업의 실체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둘째, 사업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약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구조 (모델)인 일명 '보상플랜(마케팅플랜)' 의 실현가능성에 집중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수익의 투자원리금 배당관련 자금의 출처를 수사하여 사업의 계속 가능성 여부 및 하위(후순위)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 방식의 일명 '돌려막기식' 투자원리금 배당방식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아울러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이외 방문판매법 제24조의「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상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 검토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추가인지를 함으로써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2.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날로 지능화·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유사수신범죄는 형법상의 일반 범죄에 달리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기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 금융투자사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하고 유사수신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여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의 입체적·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되면 유사수신범죄의 단속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33)]

첫째, 검찰은 법원 판례분석을 통한 철저한 법리검토,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지휘, 기획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 기소 및 공소유지로 관련 피의자를 엄중처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은 유사수신범죄 수법은 지능적·전문적·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적용법조의 내용이 복잡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업범죄 수사의 필수적인 회계장부의 이해 및 금융관련 전문지식[34)] 등 폭넓은 지식이 습득되어야만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사건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금융사기분야에 역량을 갖춘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이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정기적 기획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일부 비판이 있지만[35)], 형사처벌 이외의 다양한 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36)] 특히 국세청은 유사수신혐의 업체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실체성이 없거나, 설령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되지 않고 투자자들의 출자금만으로 약정한

---

33) 수사실무 기관의 공조를 강조하는 관점으로는 곽병일, “사이버범죄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 치안 현장의 실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5 참조.

34) 물론 금융(finance)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복합적이기는 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Douglas W. Arner., Financial Stability,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특히 이에 대해서는 p.24를 보라.

35) Douglas Husak, Overcriminalization: The Limits of the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79.

36) 이러한 현상을 “형사법의 민사화, 민사법의 형사화”라고 표제화하기도 한다. Thomas Koenig, Michael Rustad: “Crimtorts’ as Corporate Just Deserts,” 31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289, 297 (1998)

고수익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형사처벌[37] 이외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자금모집행위 업체의 수익현황 등에 대한 충실한 자료 등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이를 근거로 미납한 세금을 과세하거나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는 강력한 세무행정 제재가 필요하다.

넷째 금감원은 유사수신혐의 업체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실체성이 없거나, 설령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되지 않고 투자자들의 출자금만으로 약정한 고수익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형사처벌 이외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자금모집행위 업체의 수익현황 등에 대한 충실한 자료 등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이를 근거로 미납한 세금을 과세하거나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는 강력한 세무행정 제재가 필요하다.

37) 막연하게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같은 취지로는 강동범,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참조.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동범,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곽병일, “사이버범죄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 치안 현장의 실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5

김대근, 근대사회에서 화폐화의 딜레마와 법의 문제,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4.

김대근,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김대근 외.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금융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김일수·배종대·이상돈,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2001.

김현수, “지능·경제범죄수사” 경찰청 수사연수원, 2016.

도중진. 사기죄와 경제범죄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전지연, “인터넷 피싱의 형사법적 책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최인섭·이천현·오경식·안경옥·이경렬,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69쪽.

최호진, “사이버 해킹과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국외문헌]

Bernard E. Harcourt, *The Illusion of Free Marke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Carl Wennerlind, *Casualties of Credi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Douglas Husak, *Overcriminalization: The Limits of the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Douglas W. Arner, *Financial Stability,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Samuel W. Buell, *Capital Offenses: Business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s Corporate Age,* W. W. Norton & Company, 2016

Thomas Koenig, Michael Rustad: "Crimtorts' as Corporate Just Deserts," 31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289, 297 (1998)

[판례]

대법원 1981. 9.8, 선고, 81도1955,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1997. 7. 28. 90도700 판결.

대법원 1997. 7. 28. 90도700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대법원 2010. 5.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대법원 2016. 2.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노445 판결.

경찰청. 보이스피싱 발생. 피해 및 검거 현황. (2006. 6 ~ 2015. 6).
경찰청. 지역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2015).
경찰청. 연령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2015).

[보도 자료 및 기사]

경기부천소사경찰서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조직 구성도.2015.11.
경찰청 수사 참고자료.(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2009.10.
글로벌인터넷기업을 활용한 국제공조수사매뉴얼. 2014, 경찰청 사이버안전.
[금융 범죄와의 전쟁]<2>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서울경제. 2012.02.28.
http://www.sedaily.com/NewsView/1HMD4X3R44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발생 추이. 2016.04.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2016. 08. 09.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2016. 11. 9.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2015. 06. 23. 보도자료.

모바일 ‘섹스토션’ 범죄 부상 중 <트렌드마이크로 보고서>. CIO Korea. 2015.03.25.
www.ciokorea.com/news/24569
문자메시지도 조심 ... 신종피싱 ‘스미싱’ 경보. ZDNet Korea. 2012.08.16.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16084414
[시사금융용어 3분해설] 폰지 사기(Ponzi scheme).
연합인포맥스. 2008.12.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1969978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도. 2016.02.15.
지금도 진화 중「온라인 사기 천태만상」. ZDNet Korea 2005.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

aid=0000004091

최악의 악성코드 랜섬웨어...데이터는 기본, 당신의 기기까지 노린다. IT조선. 2016.08.28.,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4451

한국은행 2016.8. 보도자료. http://www.bok.or.kr

Citibank warns customers on “phishing” email scam. Geek. 2003.8.21.

http://www.geek.com/news/citibank-warns-customers-on-phishing-email-scam-551360/,

PC메모리에 상주하는 악성코드 주의보. ZDNet Korea. 2013.08.23.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823164250

The Horizon of Illegal Structure and Type Analysis of Conducting Fund-Rasing Business Crime*

Kim, Hyeon-soo**

Today, economic crimes due to the changing environment, tend to spread to an unspecified majority. A typical crime is a conducting fund-rasing business crime, in which a non-institutional financial company, which did not receive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did not registered or notified, promises to overpay future principal and proceeds (interest) to unspecified pers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t is a crime to deliberate and defraud money. A conducting fund-rasing business crime is a crime that undermines a sound financial system by digging into the speculative sentiment of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 a structured economic crisis, and it is higly condemnable because such crimes typically pray on the economically vulnerable people.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which was introduced to address the fund-rasing business crime problems, and classified the illegal structure presented by their types. I focused on analyzing, by year, the methods of the fundraising schemes, which are getting more sophisticated; and attempted to predict

---

* This paper reconstructed some of the parts produced by Kim Hyeon-Soo's "Analytical Research on the Types of Multiple Fraud Crimes" in the report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2016

** Gyeonggi Nambu Provincial Police Agency International Criminal Investgation Unit (Unif Chief)
- Korean Police Investgation Academy Sophisticated Crime Investgation Depatment (Outside Professor)
-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ophisticated Crime Investgation Unit (Senior Inspector)

how the scheme may change in the future with the analysis. This study is noteworthy because its analysis is, for the first time,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courts related to the conducting fund-rasing business crime acts of reception; investigation case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 press releases; and the number of similar suspicious companies reported by the FSA; and provides the types and cases of illegal fund raising by analyzing them in detail.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ose coordination system among the relevant organizations and seek ways to eradicate counterfeit crimes. To elucidate, the authorities should investigate the progress of projects explained to investors in business briefings. In addition, they should focus on the possibility of the fulfillment of the so-called ‘compensation plan’ (marketing plan), which is the ‘concrete’ profit structure (model) of the business that is explained to investors, and should investigate whether the business is sustainable. It is also crucial to prove that the principle and interest distribution methods of the investment are a “back blocking” type, which shares a pyramid scheme model.

❖ Keyword :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Financial fraud crime, Multi-level fraud, Fraud

투고일 : 8월 31일 / 심사일 : 9월 15일 / 게재확정일 : 9월 15일